

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 고 인	상 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세부내용	사용처 주소 (전화번호:)		
	가스의 종류	저장능력	
	사용 목적·방법		
	월간 사용량		
	수용 정원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작성방법 등

1. 생년월일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